「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청원경찰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기강을 강화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원경찰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17조)**

- 경고·주의 처분 요건, 처분효력, 경고·주의장 교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등

○ **징계기준,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확인서 등 미비사항 보완**

- [별표1] 청원경찰 징계기준, [별표1-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지 제1-2호 서식] 확인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원경찰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훈령 제450호, 2022. 11. 2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998호, 2024. 12. 11, 일부개정)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일부개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　　타**: 해당없음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80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7조(경고·주의 처분) ① 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 경고·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별표1]

청원경찰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사.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자.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근무지 이탈 금지 위반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비위약함+경과실
가. 집단행위를 위한 근무지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2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1-3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폭력 등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비위약함+경과실
10.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제7호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누적 경고자는 경징계 요구(1년 이내 동일사유 2회, 각각의 사유로 3회)

[별표1-3]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4. 하나의 음주운전이 표 각호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 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나.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2024. 12. 11.) 적용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승진 및 근무연수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4 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8 감액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정직	■ 처분기간+18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처분기간 중 보수 2/3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미지급 ■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 등 전액 미지급 ■ 정근수당 미지급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감봉	■ 처분기간+12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1/3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전액 지급 ■ 정근수당 미지급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견책	■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미지급 (1월 지급대상기간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지급대상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경고	–	■ 성과상여금“S”등급 미부여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 ■ 각종 포상 배제(1년 이내)
주의	–	■ 각종 표창 배제 (1년 이내 2회 이상 주의 처분)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과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 효력에 관한 기타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별지 제1-2호 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청원경찰 등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협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 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경고·주의 처분) ① 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 경고·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현 행	개 정 안
	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
[별표1]	[별표1]

청원경찰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 중과실 비위약함+ 고의	비위심함+ 경과실 비위약함+ 중과실	비위약함+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마.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근무지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근무지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청원경찰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 중과실 비위약함+ 고의	비위심함+ 경과실 비위약함+ 중과실	비위약함+ 경과실
1. ----------				
가. ----------	---	----------	----------	----------
나. ----------	---	---	---	---
다. -------	---	---	---	----------
라. ----------	----------	---	----------	----------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사.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자. 기타	----------	---	---	---
2. ----------				
가. ----------	---	---	---	----------
나. ----	----------	---	---	---
3. ----------				
가. ---------- ---	---	---	---	----------
나. ---------	---	---	----------	---
다. ---	----------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1-3]	[별표1-3]

음주운전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 중과실 비위약함+ 고의	비위심함+ 경과실 비위약함+ 중과실	비위약함+ 경과실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화·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2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마. 폭력 등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제7호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누적 경고자는 경징계 요구(1년 이내 동일사유 2회, 각각의 사유로 3회)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추가> 2."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심함+ + 고의	비위심함+ 중과실 비위약함+ 고의	비위심함+ 경과실 비위약함+ 중과실	비위약함+ 경과실
4 ----------	----------	---	---	---
5 ----------				
가 ----------	---	----------	---	----------
나 ---------- ----------	----------	---	---	----------
다 ---------- ---------- ----------	----------	---	----------	----------
라 ---------- ----------	----------	---	---	---
마 ---------- -------	----------	---	---	---
6 ----------	---------			
7.				
가 ---------- ---------- ---------- ----------	---	----------	---	---
나 ----------	---	----------	---	----------
다. --------	---	----------	---	----------
라. --------	----------		----------	---
마. 음주운전	별표 1-3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폭력 등 기타	----------	---	---	---
8 ---------- -------	----------	---	---	---
9 ----------	---	---	---	----------
10 ----------	---	---	---	----------

※ 비고
1.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
3. ----------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1.----------. 2."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현 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추가>

<추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2019. 6.25.) 적용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승진 및 근무연수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추가>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 추가 > 1/4 감액 <추가>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정직	■ 처분기간+18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미지급 ■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 등 전액 미지급 ■ 정근수당 미지급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감봉	■ 처분기간+12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1/3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전액 지급 ■ 정근수당 미지급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견책	■ 6개월간 승진및승급제한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미지급

개 정 안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5. 하나의 음주운전이 표 각호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6.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 다목,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2024. 12. 11.) 적용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승진 및 근무연수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 ----------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4 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8 감액 ■ ----------
정직	■ 처분기간+18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 ■ ---------- ■ ---------- ■ ---------- ■ ---------- ■ ----------
감봉	■ 처분기간+12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 ■ ---------- ■ ---------- ■ ---------- ■ ----------
견책	■ 6개월간 승진및승급제한	■ ----------

현 행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1월 지급대상기간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지급대상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경고	–	■ 성과상여금"S"등급 미부여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 ■ 각종 포상 배제(1년 이내)
주의	–	■ 각종 표창 배제 (1년 이내 2회 이상 주의 처분)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성과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 효력에 관한 기타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별지 제1-2호 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2. 비위유형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 추가 >		
	< 추가 >		
	성폭력 범죄(□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포함(□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해당함, □해당 없음)		
	< 추가 >		
	< 추가 >		
	<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개 정 안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 ■ ----------
경고	–	■ ---------- ---------- ■ ----------
주의	–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확 인 서

5.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6.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청원경찰 등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해당함, □해당 없음)
7.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현 행	개 정 안

현 행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협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 성적 (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추가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직인)						

개 정 안

8.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협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 성적 (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직인)						